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알리안츠LTC더블연금보험

나. 보험의 종류 : 1형 적립형, 2형 거치형

다. 연금지급형태

구 분	연금지급형태
연금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0년/20년/30년/100세보증
장기요양연금	최고 10년 / 20년 한도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Y세(45세~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 주기

보험의 종류	연금개시나이 (Y)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납입 주기
1형 적립형	45세 ~ 80세	5년	만15세 ~ min(Y-10,65)세	월납
		7년	만15세 ~ min(Y-10,65)세	
		10년이상	만15세 ~ min(Y-12,65)세	
2형 거치형	45세 ~ 80세	일시납	만15세 ~ (Y-10)세	일시납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30년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71세 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또는 일시납보험료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보험종류	1형 적립형(월납보험료)	2형 거치형(일시납보험료)
최저보험료	2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상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가)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매회 5만원 이상)

$$\begin{aligned} & 1\text{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 = \text{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times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end{aligned}$$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 15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형 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3.0% + 35,000원

나.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1) 1형 적립형의 장기납입보험료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

납입회차	할인율
61회차 이상 120회차 이내	기본보험료의 0.5%
121회차 이상	기본보험료의 0.7%

2) ‘가.’에 의하여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납입보험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가. 선납보험료는 매년 당월분을 포함하여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

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

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 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 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년 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begin{aligned} & \text{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quad \times \frac{\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나. ‘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가’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4.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의하여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5. 위험률의 적용, 변경 및 보험금의 변동

- 가. 장기요양자 관련 위험률은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회사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장기요양자 관련 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가’ 및 ‘나’에 따라 장기요양자 관련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 및 장기요양연금도 변동된다.
- 라. ‘가’ 및 ‘나’에 따라 장기요양자 관련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위험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예상 연금액의 변동 내역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공지한다.

16.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등이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의 내용 및 위험률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및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변경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취)로 공지한다.
- 다. ‘가’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 및 위험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위험률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한다.

17.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에 관한사항

구 분	가입금액
1형 적립형	월납영업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
2형 거치형	일시납영업보험료의 100%

나.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1형 적립형에 한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 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